##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4

발의연월일: 2020. 10. 7.

발 의 자:김경협·한준호·안민석

김두관・정춘숙・이성만

이수진(비) • 홍성국 • 김승원

송재호・양경숙・이용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 6. 9. 일부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법의 교통체계에 편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하거나 이와 같이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의 취득 없 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속운행에 대한 위험을 해 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 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제153조제1항제5호·제5 호의2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개조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5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사람
  - 5의2.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개조된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0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무
	단 개조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제19
	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를 개조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또
	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153조(벌칙)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
	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
	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사람

<u>&lt;신 설&gt;</u>	5의2.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개조된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
	<u>하게 한 자</u>
<u>5.</u> ~ <u>7.</u> (생 략)	<u>6.</u> ~ <u>8.</u> (현행 제5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